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

제정 1999. 6. 30.

개정 2015. 12. 6.

개정 2016. 2. 6.

제1조 (목적) 이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은 전주강림교회 장학재단 정관 제4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종류 및 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장학금
경제적 사유로 학업이 어려운 가정의 고등부, 제2청년부 학생
2. 성적우수 장학금
최우수, 우수, 장려, 고등부 성적우수
3. 신학대학(원)생 및 외국유학 신학대학(원)생
4. 타 교회나 농촌 교회의 고등학생
5. 봉사 장학금
6. 예·체능장학금
최우수, 우수, 장려

제3조 (선발기준) 장학금 선발기준은 교회학교에 등록하여 1년 이상 경과된 신앙심이 돈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고등부나 제2청년부의 일반장학금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2) 가계곤란자로 부·모 또는 본인 및 보호자의 재산세 납부액이 5만원 미만인 학생
2. 제2청년부의 성적우수 장학금
 - 1) 최우수 장학금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35/4.50(3.87/4.00)이상이고, 1년 이내 시행한 TOEIC(TOEFL)<TEPS>점수가 850(100)<756~763점> 이상인 자.
 - 2) 우수 장학금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20/4.50(3.74/4.00)이고, 1년 이내 시행한 TOEIC(TOEFL)<TEPS>점수가 750(87)<628~633>점 이상인 자.
 - 3) 장려 장학금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0/4.50(3.56/4.00)이고, 1년 이내 시행한 TOEIC(TOEFL)<TEPS>점수가 600(57)<476~480>점 이상인 자.
단, 미국에서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영어 점수(TOEIC, TOEFL, TEPS) 적용을 제외한다.
3. 고등부 성적우수 장학금(우수장학금)

- 1) 직전학기 교육청 또는 평가원 주관 전국모의고사에서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각 2등급 이내인 자(상위 11% 이내)
- 2) 직전학기 교육청 또는 평가원 주관 전국모의고사에서 국어, 수학, 영어 합이 6등급 이내인 자(6등급 포함)
 ※ 영어의 경우 절대평가가 실시될 시 5등급제이면 1등급, 9등급제이면 2등급까지 하여 상위 11%의 기준에 맞춤
4. 봉사 장학금
 - 1)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경배와찬양단 포함) 및 제2청년부 임원으로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열심히 봉사하는 자 중 담당교역자나 찬양대장이 추천한자.
5. 신학대학(원)생 및 외국유학 신학대학(원)생 장학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신학대학(원)생으로서, 경제적 사유(일반장학금 선발기준에 의함)로 학업이 어려운 자.
6. 타 교회나 농촌 교회의 고등학생 장학금
 일반장학금 선발기준에 의함
7. 고등부·2청년부 예·체능 장학금
 - 1) 최우수 장학금
 최근 1년 이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국 단위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학생
 - 2) 우수 장학금
 최근 1년 이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국 단위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학생
 - 3) 장려 장학금
 최근 1년 이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 단위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학생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함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수준의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을 말하며, 그 외는 장학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4조 (신청절차) 장학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는 장학금 지급신청서와 해당 추천인(소속담당구역장, 소속담당교역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밀봉된 추천서가 신청 마감일까지 본 장학재단의 운영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신학대학(원)생 및 외국유학 신학대학(원)생의 경우는 본 교회 당회장이 추천한 자로 제한한다.
3. 타 교회나 농촌 교회 고등학생의 경우는 출석 교회 당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5조 (평가기준)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학교성적 40%, TOEIC(TOEFL)<TEPS> 점수 40%, 후원금 가산점 20%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1. 학교성적은 평균평점 (4.0) 4.5 만점 기준.
2. TOEIC(TOEFL)<TEPS>점수는 990(120)<953>점 만점 기준.
3. 후원금은 총 1백만 원 만점 기준.

제6조 (제출서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추천서 1통(소정양식 : 소속담당구역장, 소속담당교역자 또는 소속교회학교부장)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 경제적 사유, 신학대학(원)생 및 외국유학 신학대학(원)생의 경우

(1) 비과세 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중 해당증명서 1부.

(2) 기초생활수급 자격확인서 1부.

2) 성적우수자의 경우

(1) 학교 성적증명서 1통.

(2) TOEIC, TOEFL 또는 TEPS 점수 사본 1통.

3) 타 교회나 농촌 교회 학생의 경우

(1) 출석 교회 담임목회자 추천서 1통

(2) 비과세 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중 해당증명서 1부.

(3) 기초생활수급 자격확인서 1부.

제7조 (선발방법)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방법은 장학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제8조 (지급 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 지급액은 별표1과 같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 수와 지급액은 매 지급 시마다 장학재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칙 이외의 사항은 장학재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처리한다.

1. TOEIC 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TOEFL 또는 TEPS 등의 성적은 공인영어성적 환산표의 산출 기준에 준한다.

2. 부나 모가 본 교회에 등록하고 1년 이상 십일조 생활을 한 성도의 자녀에 한해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내 일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일반 또는 봉사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4. 최근 1년 이내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5. 최근 2년 이내 봉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봉사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6. 타 교회나 농촌 교회 고등학생으로서 일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7. 장학금은 년 2회(2월과 8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특별한 학생을 지정하여 장학재단에 현금한 후원금은 지정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5. 12. 6.)

제1조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2. 6.)

제1조 이 세칙은 201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 학 금 지 급 액

구 분	지 급 액
성적 및 예체능 장학금	1. 최우수 장학금 : 300만원(고등부 100만원) 2. 우수 장학금 : 200만원(고등부 70만원) 3. 장려 장학금 : 100만원(고등부 50만원)
일반장학금	1. 대학생 : 100만원 2. 고등학생 : 50만원
봉사장학금	100만원
신학대학(원)생	100만원
타 교회나 농촌교회 고등학생 장학금	50만원